명지대학교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내부규정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운영위원회 내부규정)

2024.11.25 개정

관련근거 :

- 명지대학교 학칙 제4장 제1절 제27조의2 **『인증프로그램의 편성·운영 및 이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과정 제48조의2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시행하는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 명지대학교 학사행정/제1장 교무행정 **건축학인증프로그램에관한내규 제3조(인증프로그램운영) 『인증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대학에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과편성

1.1. 건축학부의 졸업이수를 위한 기준 및 교양과목 이수기준은 기본적으로 입학년도의 건축대학편람을 따른다.

1.2. 매학기 교과목 개설은 다음 건축학부 편람의 교과이수모형에서 요구하는 각 학기별, 학년별 교과목들을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황에 따라 개설학기 기준을 따를 수 없을 경우 학부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설여부를 결정한다.

1.3. 1~5학년 수준의 건축 설계 스튜디오 교과 수강인원은 교수 1인당 14명 이하로 한다.

1.4. 전공교과의 계절학기는 설계 워크샵 및 국제설계 워크샵을 기본으로 하며, 해외 대학과의 교육교류 필요에 따라 개설되거나 설계교과 보충교육, 지도교수와의 실무설계프로젝트 수행 참여 등을 위해 개설될 수 있다.

2. 교과과정 이수기준

2.1. 일반사항

2.1.1. 교과수강은 건축대학 편람 교과이수모형을 따르도록 하고 졸업을 위한 교과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건축대학 편람의 전공 및 교양교과의 영역별 최소이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1.2. 수강신청은 학생들의 자유선택에 의하며, 일부 과목별로 수강 대상 학년이 지정될 수 있다. 설계교과의 경우는 2.2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2.1.3.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건축설계1,2와 같이 전공교과 중 순번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만 수강이 가능(건축설계5,6의 경우 예외)하다.

2.1.4. 건축학 전문학위 교과과정의 전공교과들은 학점세탁을 위한 재수강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건축학부에서 개설, 운영하는 필수 수강 교양 교과목들에 대하여 학점세탁을 위한 재수강을 건축학부에 소속된 학생은 불허한다. (건축학부 외 소속 학생들은 본부규정에 따름) 이 항의 시행일은 2013.3.1.자이고 2013학번 신입생부터 일괄 적용된다.

2.1.4.1. 재수강 제한 대상자(2013학번과 그 이후 건축학부 재학생)로서 과거 F 학점 이외 학점을 받은 학생이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해당 과목의 과거 학점을 최종성적의 상한선으로 적용 받는다. 이 규정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2.1.5. 건축학개론은 1학년 설계교과 수강시기에 수강하며, 2013학번부터 필수 이수해야 한다.

2.2. 설계교과 이수기준

2.2.1. 설계교과는 지도교수와 학생간 1:1 개인지도를 전제로 하는 스튜디오 방식의 실기교육으로 운영하며, 건축설계와조형1,2, 건축설계1~6, 건축종합설계1,2, 설계워크샵 등이 해당된다.

2.2.2. 설계교과는 순차적으로만 수강 가능하고, 건축설계1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와조형1, 2를 수강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점 인정을 받은 후 가능하다. 단, 건축설계5, 6은 순서에 상관없이 수강 가능하다. 건축종합설계1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1~6 교과목을 모두 수강 후 가능하다.

2.2.3. 설계교과는 한 학기에 두 과목 이상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또한 학년 내 두 학기 연속해서 동일한 설계지도교수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되 원활한 교과 운영을 위해 설계 학년주임교수의 결정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2.2.4. 수강 학생의 학년 내 설계지도교수 배정은 균등한 인원 배분과 원활한 교과 운영을 위해 설계 학년주임교수에게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

2.2.5. 설계교과에서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의 자구노력 가능성을 제공하며, '설계워크샵'을 수강하여 기존 F 학점 설계교과 교육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 상한선은 B+로 제한한다. 이 강좌는 보완하고자 하는 설계교과 학점에 상응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2.5.1. '설계워크샵'은 2020년부터 격년으로 하계방학 기간에 개설한다.

2.2.5.2. 원칙적으로 설계교과 F학점을 받은 학생들만 '설계워크샵'을 수강할 수 있다. 단, 건축설계와조형1,2 수강을 마친 경우 본인의 설계교육 보충을 위해 희망할 경우 수강할 수 있다(2021년부터 적용). 단, 이 경우 학부장과의 면담 후 학부장 추천으로 수강 가능하다. '설계워크샵'은 재학기간 중 총1회에 한해 수강 가능하다.

2.2.5.3. 설계교과 F를 받은 학생은 '설계워크샵'의 개설 시점까지 다음 단계 설계교과 수강을 허락한다. 단, '설계워크샵' 과목이 개설된 이력이 있는데도 최단 시일 내에 수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은 다음 단계 설계교과를 수강할 수 없다. 이 기준을 무시하고 설계교과를 수강할 경우 수강철회 해야하며, 행정적으로 수강철회가 안 될 경우 F학점 처리된다.

2.2.6. 모든 재학생 및 휴학생은 건축종합설계1,2 수강을 위해서는 매년 2학기 중 선행되는 사전 절차에 참여하여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하고 최종 결정된 지도교수 배정에 의해서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교수회의에서 특별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전 절차 참여 없이 건축종합설계1 수강은 불가하다.

2.2.7. 모든 재학생 및 휴학생은 건축종합설계1,2 수강을 위해서는 매년 2학기 중 선행되는 사전 절차에 참여하여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하고 최종 결정된 지도교수 배정에 의해서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교수회의에서 특별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전 절차 참여 없이 건축종합설계1 수강은 불가하다.

2.2.8. 건축종합설계1의 지도교수는 2학기 중 예비 절차에 의해 결정되며 학생은 이것에 의해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지도교수가 건축종합설계2 지도를 연속해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 학생이 최종 결정된 지도교수 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수강신청을 할 경우 전체 교과운영 행정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수강철회 및 강제 조정될 수 있다.

2.3. 편입학 및 복학 교과 이수기준

2.3.1. 편입학 또는 복학생의 경우 본 규정의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2.3.2. 편입학 및 복학생들의 교양과목 이수기준은 대학본부(명지대)에서 마련한 기준을 따르되, 건축대학의 5년제 교양과목 최소이수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5년제로 편입/복학 한 학생들은 성적증명서 및 필요시 추가자료 등을 구비하여 건축학부 수강지도위원회의 수강 지도를 받아 '건축학부 복학 및 편입생을 위한 5년제 교과이수 인정목록'(아래 그림 참조)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졸업을 위한 교양 교과목 목록을 결정한다.

2.3.3. 전공교과 인정에 있어 편입학 학생이 설계 기초과정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미 이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적대학(KAAB인증 전문학위과정이 아닌 경우)에서 설계교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4개 학기(2년)를 이수한 경우 최대 8학점까지(명지대 설계교과 1학년 수준에 해당), 6개 학기(3년)를 이수한 경우는 최대 18학점까지(명지대 설계교과 2학년 과정에 해당)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 전공영역 교과목의 경우 대학본부에서 마련한 총 학점 기준 내에서 증빙자료와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2.3.4. 전적 대학이 KAAB인증 프로그램이고 학점 및 교육수준의 편차가 크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이수된 학년수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전적 KAAB인증 대학 1, 2학년설계교육을 온전하게 수료한 경우 명지대 설계교과 3학년 수준부터 수강 가능)

2.4. 건축학부 전과(전출) 사정기준 (2014.3.1.부터 시행)

2.4.1. 건축학부 소속 학생이 명지대 내 타 학과(부)로 전과하기 위해서는 본부규정에 의한 기준 충족 외에 전출신청 시점까지 모든 학년의 설계교과들의 성적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2.4.2. 건축학부 주임교수는 전출 희망자 면담 시 위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출을 승인한다.

2.5. 교환학생 파견 대학의 전공학점 인정 기준

2.5.1. 대학본부와 건축학부 교수회의에서 학점교류를 인정하는 해외 대학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학기를 이수할 경우 현지 대학에서의 수강 예정 교과목에 대하여 건축학부 담당 교수진의 판단에 의해 건축학부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2.5.2. 전공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들에 대해 사전에 해당 전공 영역 주임교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고 '국외대학 파견 교환/방문학생 학점인증의뢰서'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 후 건축학부 주임교수의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설계5'는 학점교류 인정으로 대체할 수 없다.

2.5.3. 최종 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현지 수강을 마친 후 사전 확인된 각 해당 과목에 대하여 현지 대학 발부 성적증명서, 과제 및 시험 등 성과물을 근거로 전공 영역 주임교수 및 건축학부 주임교수 확인을 거친 후 인정된다.

2.6. 자율전공 입학생 등 전입 경과규정

2.6.1. 2025학년도부터 자율전공 입학생의 건축학(전통건축)전공 배정을 위해 '건축설계와조형1' 교과를 계절학기 기간에 개설하여 대체 가능하도록 한다.